

독서교육인증제 실시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2009. 3. 1

□ 개정 : 2010. 3. 1

□ 개정 : 2012.10. 1

□ 개정 : 2015. 4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독서교육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,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 할 수 있다.

제3조(인증기준) 독서인증을 위한 기준은 교양 교과목의 이수학점과 연계한다.

제4조(시행절차)

① (교양적·논리적·과학적)글쓰기와 자기표현과 핵심 1영역, 핵심 3영역과 연계하여 각 과목당 권장도서로 지정된 2권의 도서를 담당교수 재량으로 선택하여 학기 중 2회 이상 평가하고, 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에 반영한다.

② 독서인증 과목 배점에 관한 사항은 독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독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5조(휴학 및 복학자) 휴학 및 복학자에 대한 독서인증기준 적용대상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독서교육위원회) ① 독서교육인증제도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서교육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.

제7조(기타) 본 규정 운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